

#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신성봉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2. .

발 의 자 : 신성봉·강혜순·권태호  
 김순점·이효상·서경환  
 천병태·김경환·이복희  
 하경숙 (10명)

## 1. 제정이유

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을 통하여,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노인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노인상담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노인상담소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노인상담소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노인상담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사. 노인상담소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 3. 근거법규 : 「노인복지법」

## 4. 조 례 안 : “따로 붙임”

##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들에게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제공함으로써,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노인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설치)**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노인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상담소는 노인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상담소는 노인에게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
2. 욕구조사
3. 욕구해결 및 문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
4. 복지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

**제5조(시설)** 상담소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상담실
2. 교육실
3. 자료실
4. 휴게실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**제6조(운영인력)** 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의 사정에 따라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.

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로 상담 또는 사회복지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.

③ 운영인력의 임무, 근무시간·요령,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7조(자원봉사자)** ① 상담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(이하 “자원봉사자”라 한다)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자격자의 경우 상담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강사)** ① 상담소는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탁운영)** 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지도·감독)**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위탁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서류를 감사하고 수시로 지도·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22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6. 2. 29.(월)
- 제출자 : 신성봉외 9명
- 위원회회부 : 2016. 3. 4.(금)
- 위원회심사 : 2016. 3. 11.(금)

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신성봉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을 통하여,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노인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노인상담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노인상담소 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노인상담소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노인상담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노인상담소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 4. 근거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

## 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익희)

-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상담 및 교육, 서비스 연계 제공을 통하여, 소외, 세대간의 갈등, 가족의 분열, 노인 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< 관 계 법 령 >

### □ 노인복지법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4.6., 2007.5.17., 2009.12.29., 2011.7.14.>

...

####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...

**제144조(공공시설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